

제 282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4.10.24.)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영미]

목 차

1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	---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4. 10. 14.

나. 발 의 자: 김혜숙 의원 대표발의(11명)

(김혜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다. 회부일자: 2024. 10. 14.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 (22.12.26.)에 따라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 및 징계를 받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제한을 정함(안 제6조의2)

- 1)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전액 삭감
- 2)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별로 삭감 또는 감액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100조
-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해당없음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0. 04. ~ 10. 1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조례제정의 필요성: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 (22.12.26.)에 따름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40조·제100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해당없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 및 징계를 받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안 제6조의2에 의원의 구금이나 징계에 따른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감액 내용을 규정하였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2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의결하면서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의원 구속이나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 시 의정비를 감액하도록 권고함.
- 올해부터 전국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가 실시되고, 지방자치가 성숙하면서 의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 짐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

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 범위에서 지급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1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

□ **출석정지 등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 본회의·위원회에 일정 기간 참석할 수 없는 출석정지를 포함하여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도 의정비 감액

구분	의정비 지급 제한(예시)
출석정지 ▶ 일반적인 경우 ▶ 질서유지 의무 위반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 1/2 감액 (⇨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공개회의 경고·사과 ▶ 질서유지 의무 위반	징계의결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비 1/2 감액 (⇨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2 지방의원 구속 시 의정비 제한

□ **지방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

-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의 공소제기 후 구속기간 동안 의정비 전액 또는 지자체장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정비 감액
- ※ (예시)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 전액 미지급, 월정수당 ○% 이내 지급 등